

제407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27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6.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1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1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1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2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

상정된 안건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4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4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 4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 4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4
6.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4
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4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4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4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5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5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5
1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5
1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5
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5
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5
1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5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5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5
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5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5
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5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5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5
2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5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5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5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5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5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5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5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5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5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5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5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5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5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5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5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5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5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5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5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5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5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	5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	5

(14시25분 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0건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는 좀 듣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소위원회의 논의 법안 중에 민주유공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제, 그제 일부 언론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또 국민들 민심을 좀 분열시키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견이 다

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이 아닌, ‘수천 명이 대상자다’, 대상자가 수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대상자가, 민주화운동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 부상자·행불자 관련된 사람이 부마항쟁까지 합쳐서 900명입니다. 이 900명 중에, 이게 다가 아니고 900명 중에서도 국가보안법·형법에 저촉된 분들은 또 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게 5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이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약한 것은 보훈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게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현재 있는 900명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보훈처 명단 중에서 실제 대상자가 될 사람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윤한홍 위원 좀 나가라고 해, 잠깐만.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요. 언론 공개를 하도록 제가,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 끝나면 나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심의위원님들께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거나 아니면 반대를 표시하는 건 좋은데 사실관계가 아닌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언론에 정확하게 정리도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 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발언을 해야지.

○**소위원장 김종민** 한 말씀만 하세요.

○**윤한홍 위원** 민주화유공자법의 정의 규정에 민주화보상법 관련자 중에서 명예회복도 받고 보상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로 돼 있잖아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따르면’ 해서 그 명단이 나왔을 거예요. 보훈부에서 만들어 낸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법의 구체성이 없다, 과연 누구를 민주화유공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정의 규정에 따르면 한 900명 명단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훈부에서 옛날에 행안부 내무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법에 나온 백서에서 추려 낸 자료겠지요. 그게 흘러 나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흘렸다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히 보십시오. 거기다가 국가보안법·형법에 걸린 사람은 배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조 조문 3항인가 보면 또 반성하는 사람은 포함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언론에서 쓴 것 같은데 그걸 전부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을 제출하신 분들이 딱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들이 민주화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걸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제시를 안 하고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내놓으니까 지금 그렇게 논란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한 김에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지금은 금융 관련 법안 논의할 시간인데 보훈 관련 법안 논의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 없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

난번 회의 때도 김희곤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말썽처럼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서 박종철 이한열 이분들에 대해서 유공자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와 국가유공의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제기하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의를,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하여간 이것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즉 1소위 위원님들이 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들, 자리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6.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1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1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1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2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
- (14시30분)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50항의 안건들 대부분이 새로 올라온 게 아니라 매번 우리 1소위에 올라왔던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시간이 얼마까지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핵심 쟁점들 위주로 의견들을 간략하게, 우리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금년 10월 15일 만료 예정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7년 말이나 28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서 기업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2쪽의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배제라든가 평등권 침해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윤창현 의원안은 27년 12월 말, 김종민 의원안은 28년 10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김종민 의원안 제18조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공동관리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 제2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 의결 시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자금지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윤창현 의원안 제34조에서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면책 특례의 예외사유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면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방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먼저 2페이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이 제기한 이슈가 있는데 그간 개정 과정에서 법원 제기 이슈 관련 우려 소지는 제거된 상황으로 현 경제 상황 감안 시 워크아웃 제도의 연장이 긴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기업 부실위험 전망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유효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시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며 추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감사원 의견이 있는데 감사원 의견 일부 수용하여 면책 범위를 조정위원회에 한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며 추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우선 오늘 법원행정처 출석하셨나요? 법원행정처가 명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다뤄야 될 내용일까요? 법무부가 나와야 될 사안 아닌가요, 이거?

○소위원장 김종민 법무부는 나와 있어요?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랑 3페이지에 걸쳐서 표에 있습니다. 표에 법원행정처 의견 그다음에 오른쪽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채무자 배제 사항은 2011년 법 개정으로 이미 해소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적자치 원칙, 재산권 침해 사항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가 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등권 침해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의견은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자는 관련이 없고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받게 되고 이후에 금융채권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이슈가 상거래 채권자가 특히 불리하거나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이 법이 처음 제정이 될 때 왜 제정됐나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IMF 직후에 기업 구조조정……

○이용우 위원 IMF 직후에 구조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도산 법원이나 이런 것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주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한시법의 취지는 긴급한 행정권에 의해서 재산권에 제약을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게 도산 법원이라든지 파산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정비에 의해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의견 자체가 그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도산 법원도 생겨 있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시법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영구법화하느냐? 한시법은 한시법으로서 긴급할 때 필요한 사안인데 그 긴급성이 그러면 법원행정처의 의견처럼 IMF 이후 거의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그동안 기촉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고 연장이 되면서 많은 개정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관치금융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기촉법이 한시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경제 상황상 그런 측면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결국은 다시 재입법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한계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기촉법은 사실 선택의 수단의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제공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발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제로 IMF를 극복하고, 지금도 경제가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도 저희가 위크아웃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회생 절차와 달리 기촉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연쇄적인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아주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우리가 IMF 당시도 울산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현대자동차의 부품이, 자동차 하나에 부품이 약 2만 개가 들어가니까 거기 1차·2차·3차 밴드 이런 부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제가 세계적이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고 상당히 위기의 연속, 상시 위기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실이 협력업체에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연쇄적인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회생 절차에 비해서 신규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또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금융채권자만 참여하잖아.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강민국 위원 금융채권자만 참여해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빠른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연장안도 보니까 저는 김종민 의원님 안처럼 한 10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도 10년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5년에 동의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그전에 특별한 이견이 없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논쟁의 역사가 있어서 이거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입법조사처에서 기촉법에 대해서 상시화가 적절하냐 그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걸 한 시범으로 계속 연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도산제도가 정착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제도가 시장에서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법의 연장에 대한 약간의 소극적·부정적 의견인 거지요.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몇 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연장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2018년도 논의인 것 같고요.

그리고 14일인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보낸 글이

있어서 저도 이걸 별도로 읽어 봤습니다. 대법원의 문제의식도 IMF 직후에 대한민국은 기업 도산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자율적 협약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고 그 워크아웃 시스템을 나름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기촉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병행하면서 또 약간 달리 도산 3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화해, 파산 또는 회사정리라고 하는 그 절차가 안착화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사회적으로 부득이하다라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촉법이 그동안 만들어져 일정기간 작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기촉법 시스템을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내지 이것에 대한 역할들을 좀 더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논쟁의 와중에 대법원의 주장은 축소해야 된다, 또는 기존에 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도산 절차,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나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 다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의 회사 정리 절차가 어떻게 성숙돼 있는가는 일단 논의는 안 하고 별개로 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를 좀 더 성숙되게 하려면 법원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질의응답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한 것들이 있지만 그 논의 속에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 당장 필요하면 존속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길게 존속할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걸 10년 연장하자, 5년 연장하자 이야기할 때 그 논거가 공유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한시법이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항상 아쉬웠던 점이 미리 논의가

충분히 되고, 최소한 한 1년 전이라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 두세 달, 이것 지금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정도로 해서 들고 와서 늘 문제가 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그런 원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여섯 차례나 이미 개정이 있었고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법리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의 내막은 결국은 법원의 회생 절차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보면 성공률이 34.1%, 정상화 기간이 3.5년 등으로 회생이 각각 12.1%, 10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희곤 위원** 그래서 또 아까 강민국 위원도 말했지만 회생 절차하고 다르게 신규 자금지원이 아니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장점의 측면에서 낮고 또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또 연쇄 부실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만능의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지금 IMF보다는 어떤지 제가 감히 갖다 맞출 수는 없지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은행들도 상당히 연체율도 높아지고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판이니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년이라도 존속시켜 놓고 그 과정 안에서 이 제도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보다 더 완벽한 제도로 가야 될지, 아니면 법원에 맡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음은 조웅천 위원님 그리

고 윤창현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이렇게 발언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유의동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조웅천 위원** 먼저 했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

○**조웅천 위원** 유의동 위원님이 먼저 했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웃음소리)

부위원장님 말고, 직제가 어떻게 되시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입니다.

○**유의동 위원** 정책관님, 몇 가지 여쭙볼게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한시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를 만들면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점이 이것은 한시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이 제도의 정확한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당시 IMF 직후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고 여러 가지 법원과의 논쟁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약도 말이에요 비상약 같은 것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 어떤 때만 쓰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상황이 아주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만 쓰는 거다 이렇게 특징을 지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상약이라고 해서 비상시기에만 제조를 하거나 평상시에는 제조를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상약이라는 것들은 만들어 놓고 비상시에만 쓰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 체제를 그런 쪽으로 바꾸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IMF 위기 때 이 법이 필요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기도 경제 상황이 위기다, 이런 수요가 계속 현장에서 요구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를 봐도 지금 이 기촉법에 의해서 졸업을 하고 구제가 되고 뭐 이런 기업들 숫자가 적지 않게 그냥 늘 상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법은 유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의 기한이 연장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비상 상황에 쓰이는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제한을 하는 조건을 둔다면 이 법이 매번 이렇게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이런 불필요한 게 없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법을 사용하시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한번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도산법이라든지 회생법원이라든지 이런 제도, 기관들이 만들어져도 비상수단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이 특별한 상황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부각해서 특별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저희한테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제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현시점에서 아마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생절차·도산제도가 다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걸 수요로 하는 기업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수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생 절차로 넘어갔을 때의 낙인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수주 산업이나 수출 기업이나 공공입찰 시에 제한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을 원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금 다른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고민을 하셔야지. 그런 필요성이 현장에서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연장해 가고, 한시법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체제상 불안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저희도 상시화 논의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저희 TF에 회생법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시화 논의를 해 왔지만 회생 중심의 도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에 따라서 한시법의 형태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실 이런 유연한 형태의 기업 정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바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이 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금융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유의동 위원 금융위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주무이신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유의동 위원 주무 담당관께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거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법이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추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상설화 부분을 만들기에는 약간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연장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은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상설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전이랑 사실 상황이 바뀐 게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것을 상설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워크아웃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워크아웃 관련해서 IMF 보고서가 있는데 IMF 보고서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법원 외에, 법원 구조조정 체계 외에 추가적인, 현재 우리 기촉법상에 있는 워크아웃과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IMF 분석을 보시면 기존에 법원 외 구조조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 구조조정, 워크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했었지만 세계 60개 주요국을 비교했는데 법정 외 구조조정 부분에서 한국이 대상국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존의 워크아웃이 상당히 잘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법원 외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설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일단, 상설화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연장을 해 주시면 상설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유의동 위원님이 먼저 저랑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1소위는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런 중요한 법이 한시법이라는 것에 일단 체제상 이게 정상적이나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아는 한 한시법이라는 것은 농어민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제적·세제적 그런 배려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 그걸 영구히 주는 게 제반·기타 시스템하고 저촉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이번에만 이렇게 봐준다, 혜택을 부여한다 예외를 규정한 거지요.

아니면 불법 건축물 같은 것, 계속 이행강제금 날아가고 하는데 양성화시켜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이 또 그런 민원들을 받아 가지고 눈 질끈 감고 앞으로 2년 동안 양성화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시법이.

그런데 세계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간, 10강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조정을 판잣집처럼 관련 법을 이렇게 계속 누더기로 이어 간다는 것에 일단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견 뽕뽕하게 드러내 놓고 영속적인 법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때 IMF는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우리 다 그냥 나라가 금방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금불이 들고 나오고, 다들 애국자가 됐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법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01년에 만들어졌고요. 재입법이 네 번이 됐습니다. 2007년, 2011년

또 2016년, 2018년. 기한 연장은 2014년에 2년간 단 1회 있었지요. 재입법은 왜 됐나? 효력 만료로 실효되니까 한 1년 반 후에 혹은 몇 달 후에 부랴부랴 한시법으로 재입법을 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에 재연장이나 재입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영속법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COVID 팬데믹 종료 이후에 한계기업들이 위험하다라는 명분인데, 2007년인가 이때는 리만입니까? 그때그때마다 하여간에 해야 될 명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포 마케팅을 그냥 하신 거예요, 호러(horror) 마케팅을.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단군 이래 최악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그건 귀에 못이 박힌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 끝나면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나올 것이고 그때 또 연장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법치주의를, 룰 오브 로(rule of law)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한시법은 창피하다. 이건 룰 바이 로(rule by law)다, 법에 의한 지배다. 차제에 만들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때 갑자기 IMF가 들이닥치고 하니까, 정말 처음 당한 미증유의 위기였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었고 부랴부랴 IMF 권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할 것 다 하고 간 빼 주고 쓸개 빼 주고 다 빼 준 게, 그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시장 기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가능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2001년 9월에 만들어 가지고 2005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시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수차에 걸친 개정으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견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영구법으로 가든가 안 그러면 과감히 도산 법원에 맡기든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원하니까 금융위가 이 법을 갖다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기업을 많이 위하셨어요? 그건 좀 궁하다.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좀 떳떳해집시다.

제가 보기에 이게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아주 창피스러운 법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이용우 위원님까지만 하고 일단 이것은 판단 한번 해 볼게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조금 감안하셔서 핵심적인 요지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 예, 그럴게요. 조금 뒤늦게 발언 신청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금융연구원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회생·파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법조계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회생·파산, 도산 법원, 법원의 회생과 파산이라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코트(out of court) 개념이에요. 법원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조정 체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IMF가 이 아웃 오브 코트, 코트(court)에서 벗어나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거꾸로 점수를 엄청 높게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유연하다는 느낌.

그러면 이것을 상시화하지 그랬냐고 그러는데 좀 죄송한데 상시화하려고 그러면 법조계에서 반대합니다.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놓고 이것을 영원히 금융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이런 차원도 좀 있고.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가 우리 스스로 발명해 낸 것 비슷한, 상거래채권을 빼기 때문에 납품대금 같은 것 빼고 하면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금융 담당자만 모여서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법으로 간 이유는 유연성 때문이고 그 유연성이 상시화되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는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

까 이게 상시화되지 않은 채 계속 한시적인 법이 가는데 또 나름 제도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니까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좋아하고 또 편하고. 그러니까 길을 하나 뚫어 놔더니 많이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영구히 인정해 주겠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애매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 길을 막아 버리면 못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애가 왜 상시화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법조계가 가진 묘한, 금융계와 법조계의 어떤 시각 같은 것에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면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IMF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는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참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장을 해 준 다음에 한번 진짜로 빨리빨리 상시화의 가능성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음, 이용우 위원님 하시고……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 간단하게. 이 질의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종민 순서가……

○윤한홍 위원 나는 자료 요구만 하려고요.

○강민국 위원 나는 30초만 하면 되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두 분 먼저 하시고 이용우, 박재호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윤한홍 위원 부위원장님, 여기 자료 보면 구조조정 제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적 구조조정이 두 가지가 있고 공적 구조조정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여기 6페이지 보면 통계는 워크아웃 통계만 나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통계를 같이 주시면 안 돼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워크아웃 통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워크아웃 통계가 신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대폭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구조조정 제도의 통계는 어떤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봐야 효과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들어간 것 같은……

○**윤한홍 위원**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윤한홍 간사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건데, 지금 기촉법 적용받는 현재의 기업이 몇 개인가 파악하고 있나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이런 것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강민국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83개……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신용공여, 지금은 30억 이상의 기업들이 다 해당되고요.

○**강민국 위원** 설명이 명쾌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채권단이 자기 몫의 돈을 받아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강민국 위원**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은 채권단이 자기 몫의 돈을 받아 가는 게 목적이고, 지금 기촉법이 필요한 이유는 구조조정하는 기업의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법이야. 그렇지요?

저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이리 중요한 법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기촉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물론 다지. 다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등등이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설명을 분명하게 하면 좋겠어요. 회생하고 파산은 채권단이 그냥 자기 몫의 돈을 받아 가는 거고 이것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다시 기업을 재기시키려는 목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호 위원** 기촉법 자체가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자금지원 및 속도 이런 걸 무시를 못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지금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한시법인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몇 달 전부터 이런 내용을 통계를 딱 뽑아서 ‘이것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한계기업을 계속 우리가 잘못하면, 회생이 되면 오히려 더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규모의 회사 또 어떤 종류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자금도 빨리 지원되고 해서 해당되더라’.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억울함은 계속 있어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양쪽 측면을 딱 해 가지고 미리 통계를 다 뽑아서 ‘회생 절차로 가니까, 회생법원으로 가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기업이 첨단 기업으로도 갈 수 있으면서 또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와서 설명을 미리 딱 하면서, 그러면 ‘법을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해 주지만 이런 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갖고 와서 ‘연장합시다’ 이러면 선뜻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계속하면서 좀 지나가고 끝날 때 되면 또 옵니다. 또 와서 이런 법안 또 내고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런 통계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앞으로 법체계를 어떻게 바꾸면 기업도 살고 우리나라 구조조정도 되고 하는 것으로 가겠다라는 걸 좀 하셔서 ‘회생법원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하고 나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앞 페이지는 한계기업 변화 추이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부실징후기업의 숫자가

2021년 157개에서 2022년에 183개 사로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이것보다도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했을 때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려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률을 보더라도 워크아웃의 경우는 34.1%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12.1%인데요. 회생 절차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성공률을, 그러니까 회생의 경우에는 계획만 통과되고 1회차만 납부되면 바로 빼 주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내용적으로도 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성공요소를 많이 양호하게 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데이터고요. 중소기업은행이 우리나라 워크아웃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는 저도 봤는데 이 데이터보다는 이런 기업이 또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지 이 효과를 옳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생은 됐는데 또 몇 년 있다가 이런 업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과 정확한 통계를 필요로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된 통계는 있기는 한데요.

○박재호 위원 그래, 그것을 좀 다룰 수 있어야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저희가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신청 1년 전과 신청 1년 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청 전에 -8.2%의 영업이익률이 있었는데 신청 3년 후에는 0.9%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생의 경우에는 -12.1%였는데 신청 3년 이후에는 -71.9%로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지 왜 자꾸만 한시법으로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까지 하고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진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고급 거짓말, 숫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과 삼십 얼마지요? 봅시다. 워크아웃은 34.1%의 성공률, 회생은 12.1%의 성공률, 자명한 거지요. 자명할 수밖에, 그건 자명한 겁니다. 상거래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정지시켜 버리고 노동채권에 대해서 일종의 제한 걸고, 그 회사의 채권이라면 주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일반 채권보유자 이렇게 다 있는 상태에서 몇몇 주도된 채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제한을 걸어 버리면 거기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위원님, 상거래채권은 제한이 되지 않고요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워크아웃 할 때 요구하는 사안이 뭘니까, 금융위에서? 임금, 노동채권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까? 고통 분담하면서 각각의 권한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일시 정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수요가 있다? 왜 수요가 있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다 고려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 방청석 사람들 다 빼고 하면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행정행위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어떤 때입니까? 긴박할 때, 아주 긴요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시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IMF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만들고 치료체계를 만들자, 그러면서 한시법이 아닌 걸로 하자는 거였지요.

그런데 이게 연장되는 과정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사태 등등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서 연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2016년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2018년 이후에 위기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의 의견이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법원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는 기본원칙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금융의 것이다, 법원의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이 기촉법에 촉진할 수 있는 조항들을 도산법에 포함시켜서 법원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도산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법 조항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서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재산권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금융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법안은 법원과 행정 당국의 이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두 기관이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해서 이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막판에 와서 ‘한시법이니깐 연장해 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지난번 예보법 그렇게 안 했어요? 예보도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시법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안하건대 법원과 법무부와 금융위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적자치를 다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위헌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위헌성이 있다는 법을, 그 의견을 제시한 기관도 배척하지 않은 채 법안 심의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한 1분만 추가말씀……

○소위원장 김종민 예,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유사시라고 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관련해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우 위원 유사시는 누가 판단합니까? 유사시의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얘기 들어보시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할 때도 유사시라고 되어 있고 사실 IMF에서 굳이 이 보고서를 낸 이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사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시라는

것은 사실 좀 명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사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설화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법원이랑도 상의를 하면서 논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위원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상시법으로 갈 거냐 한시법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그 판단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10월이 일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을 일몰 연장을 할지 여부의 판단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법 여부의 판단은 그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담당자를 불러다가 한 번 더 추가심의 해 보고 판단할까요?

○조응천 위원 법원하고 법무부.

○이용우 위원 그리고 쫓기지 말아야 될 게 이 법이 실효됐다가도 다시 법을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 엘리엇의 ISDS 판결 내용의 핵심은 행정권이 사실 시장의 영역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그 과정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관치가 되고 임의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연제가 일몰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요 제가 보기에 일몰 문제는 일몰 이후에 다시 논의해 볼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나 또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는 우리 국회가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일몰 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몰이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저는 하나의 판단일 수가 있으니까, 일몰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도 해 볼 수는 있겠는데 하여간 가능한 한 다음번 심의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시도해 보는 걸로 하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음번 회의 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종민 예.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께 여쭙보는 건데 지금 일몰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설사 일몰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2번, 3번 조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장을 하더라도, 실제 제가 일을 해 볼 때 면책 여부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 면책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방안으로 실제로 금융기관, 채권자의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고 별개로 만약에 다른 조항도 포함시킬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 의견도 듣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 의견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관련 부서가 오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일몰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법이 폐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몰을 안 하겠다, 가을 정도까지 안 하면 사실은 새로운 법을 내년에 만들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 할 때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보통 제도 변화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일몰 연장이 될지 아니면 일몰 연장을 포기하고 일몰을 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다음번에 회의 준비할 때 감안해 주시고, 김한규 위원님 제기한 2·3항에 대한 판단까

지 다음번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면책은 감사원에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원은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감사원까지.

○이용우 위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종민 감사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한번……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하고 법무부는 이견이 다 조정이 돼서 지금 이견이 해소된……

○조응천 위원 그래도 나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내용상으로는 이견 조정된 걸로 돼 있는데 법원행정처만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견 조정돼 있는데 불러다가 지난번처럼 한마디 하고 갈 텐데.

○이용우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한국은행 불렀을 때 CBDC 이견 없다고 나와 있다가 이견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을 뺀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직접 불러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같이 부르는 걸로 하고요. 그날 사전에 이견 조정됐는지 여부 판단을 다시 한번 잘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의원안은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3항과 4항을 통합 규정하고 규약의 제·개정뿐만 아니

라 폐지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보험협회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협회가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업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종민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과 사회교대)

12쪽입니다.

부칙인데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통합을 했고요.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앞에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협회 규약의 제·개정 시 의견 수렴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이견은 없으나 현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 통합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뒤의 윤상현 의원 것도 동의가 됩니까, 8페이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8페이지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회사끼리, 일반 시중의 시민들이 느낄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같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상대 보험회사면 1 대 9, 10 대 90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병폐해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로 이것은 자동차 보험회사끼리 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가면 귀찮으니까 너희 10% 하고 우리

90% 하고 이렇게 병폐해 있는데 물론 소비자가 그것을 안 하겠다, 나는 끝까지 0이다 하면 소송도 가고 하지요.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을 정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2 대 8이다, 1 대 9다 이렇게 딱 산정이 돼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어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업계가 정확하게, '소비자가 원하면 0으로 갑니다', 소송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반드시 첨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실은 같은 의견인데 이것을 또 보다 보면 보험회사들끼리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자율 조정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제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산업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 혹은 쌍방과실이 있는 분들 간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해결을 하는 건데 관행상 보험회사가 양쪽을 대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분쟁 조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민법상 화해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간의 조정안에 대해서 계약자가 어느 한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를 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차 보험사고에 있어서 과실처리의 원칙이랄까 기본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좀 더 자세히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서비스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견기업 역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논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공급 위축을 우려하여 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현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돼 있는데 이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해서 기금 운용계획의 집행 초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팩토링 금융서비스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시에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부

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조특법, 중견기업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 개정 이후 대통령령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매출액 3000억 전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과 팩토링 공급 확대 노력 등을 보아 가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법률에 3000억 미만으로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으로 3000억……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행령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가급적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 나름 유연하게 대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일정 규모 이하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정된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안도 특례로서 시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확장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무작정 확장할 수 없는 건데 모든 권한을 중견기업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로 넘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딱 정해 놓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은 지금 현재는 매출액 3000억 정도까지,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조특법이랑 중견기업법 전부 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대부분 다 3000억 원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기초하에서 3000억으로 지금 하자는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걸 조정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법률로서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 이렇게 법률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작동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그런데 중견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과는 달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저희 신보법 말고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에 있습니다. 조특법이라든지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도 법에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경제 규모가 바뀌면서 중견기업의 범위도 바뀌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좀 플렉서블(flexible)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 법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 법의 사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기형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법률에서 좀 더 계속 규정하고 그런 식으로 기존 입법의 경향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부위원장님,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팩토링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업 예산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런 계획도 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미 내년에 예산을 늘린 상황입니다.

○윤한홍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미 충분히 늘린 상황입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윤한홍 위원 아니, 이미 늘렸다는 게 뭐예요? 아직 이 중견기업은 대상이 안 되는데 예산을 늘렸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저희가 팩토링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팩토링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에 내년도에 당초보다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확정인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중견기업에 그만큼 할 수 있죠?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그 중견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단 지금 그 뜻이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원래 이게 중소기업부가 생기기 전에는 중견기업까지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입법을 하면서 중소기업부가 생기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걸 함께하자 해서 금액을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을 맞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3000억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단다고 해서 법안을 낸 거거든요,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의결을……

그런데 오기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법에서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방법이 있나요, 대안이? 금융위 의견 없어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계속 저희 금융 소위 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계속 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재량을 달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게 해 달라라는 논의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처럼 하면.

지금 중견기업 범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중소기업 이상의 법이고 중견기업이 법에도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요건도 복잡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입법부가 법을 정하면서

어디에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의 법을 통과하라는 이런 내용의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3000억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4000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3000억이 적절한지 4000억이 적절한지는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겠지요. 저희가 그냥 숫자가 이게 더 넉넉하니까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최소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정도 논의도 안 하고 통과시키는 건 그건 너무 저희 입법부의 태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저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늘 있어 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걸 아마 중견기업을 굳이 넣어 가지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중견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부터 조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견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타 법에 죽 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행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법으로 3000억이라는 걸 못을 박아 놓게 되면 그때마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범위를 확대하고 싶으면, 물론 입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법에 있어서 시행령상에, 그쪽은 수월하게 어떤 높낮이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팩토링하는 이 지원은 또 법을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순전히 입법기술적인 문제여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하시고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이용우 위원 저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포괄해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정을 줘서 그 한정 내에서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포괄해서 위임을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뭔가 타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 법의 어떤 법을 준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료하게 주어져야지 주어지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타 법을……

○김희곤 위원 이것을 포괄위임보다는 중견기업이라고 그래서 한정이 되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의 안은 중견기업을 추가하자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목표인데 중견기업을 다 그러면 집어넣을 거냐? 안 되겠다. 일부만 집어넣자라고 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용우 위원 아니, 법에 데피니션(definition)이 중견기업……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그러면 다 넣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넓히려고 그러면, 저 100m까지 갈 수 있는데 50m만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시행령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데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 법을 만들 때 중견기업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넣는데 이것은 규정이 너무 큰 중견기업은 안 되니까 그걸 규정을 두려고 보니까 과거에 다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3000억이면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윤창현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라고 하는 안만 보면 중견기업 다 하자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행령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기형 위원 그러면 한번 제 의견만 드리고, 일단 여기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신다면 제가 더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입법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입법하는 것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의 자본·자산 기준으로 보

니까 하는데요. 5000억에서 약 5조까지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1조일 수도 있고요 2조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근거 갖고 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밸류에이션이 작으면 그 논쟁 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크다고 봤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가 중견기업을 하면서 거의 대기업 수준에 있는 데를 도와주는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중소벤처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걸 줄이라고 했는데 그 줄인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을 국회가 가질 것이냐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냐 이런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제안하는 안이 적절하면 적절한 걸로 맞출 수도 있지요.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면 그러면 중소벤처부의 의견은 무시한 거지요. 저는 중소벤처부의 의견을 수용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게 입법적으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기형 위원님이 나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공감하실 거고.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개정안 말고 금융위가 추가하는 의견이 5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약간의 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에서 몇천억이라고 이렇게 딱 숫자를 박아서 한정을 두는 방식보다는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보라는 정도의 방향 제시 정도면 과도한 포괄위임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판단은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판단할 때 그때 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그래서 오늘 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금융위하고 신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 시행령이 임의적이고 또는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요?

○오기형 위원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 그냥 예산 확보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한 만큼만 중견기업까지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으로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중견기업을 포함하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원래 법제화되기 전에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중견기업에다가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러면 통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팩토링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들을 금융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셔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다가 여쭙보니까 구두로 다른 법률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법률의 지원 범위하고 이 법이 무조건 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왜 시행령으로 정할지 정도에 대한 얘기는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평균매출액 등’만 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라고 해서 법에는 표현이 일단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가서는 사실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균매출액 등’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왜 ‘기업 규모’라는 용어는 들어가나요? 그것도 사실은 그냥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액 부분이라면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법에 넣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정했을 때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래, 이것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텐데’ 그런 문제 제기고요.

이 법은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김종민 위원장님처럼 통과시키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여기서는 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됐을 때 계속 같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시하시면 저희가 법안 논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마무리하고요.

지금 금융위에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용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입법 논의할 때 지금 김한규 위원 말씀을 감안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시행령 위임을 우리가 다 막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령 위임이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개 정부 측에서 이런 정도로 시행령을 구상하고 있다, 그 근거는 뭐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시행령 위임이 이루어져야지. 대개 보면 ‘그냥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렇게 막연하게 해 나가면 그중에서는 법안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대개 입법 논의할 때 시행령 위임이 명시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분명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그 의견에 따른 근거와 논리를 갖고 법안 심의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

령 위임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불만이나 아니면 이의 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그런 근거 자료를 사전에 미리 공유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0억 원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은 자의적으로 3000억 원을 만든 것은 아니고 산업부라든지 중기부하고 관련된 통계를 검토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견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구간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성장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3000억 원 그 근방에 있는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 기준 3000억 원 규모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특법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도 3000억 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을 할 때 저희 차관님께서도 시행령에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 3000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 내지는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해서 먼저 이 사안에 한정해서 소위자료 5쪽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조문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쪽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허가 등 금융업 영업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정의하고 이 다중사기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2쪽에 구성 체계를 보시면 총 52개 조문과 8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유사수신행위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금융위원회에 조사·시정조치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구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법률안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포섭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을 폐지하고 제정안으로 통합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통적인 사항만 제정안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먼저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다중사기 방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간 금융위는 신·변종 사기행위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범부처 TF에도 참여하는 대책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5월 달에 의결하였고 보이스피싱법도 개정 완료했습니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변종 사기행위와 관련된 법령이 재·개정된 만큼 통합법을 제정하여 일괄 대응하기보다는 재·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한 개별형·맞춤형 대응체계를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후 운영 성과를 보아 가며 관계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다중사기 방지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범죄를 일률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장 법제화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제가 부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개별법이라는 게 통신사기피해 관련 법이 있고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개별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개별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있어요? 어떤 게 있지요? 한번 설명을, 예를 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일단 사기 관련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어느 정도 다 포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한홍 위원 다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까? 뭐지요? 유사수신행위법 이런 법인가요? 기존 법이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두 개 법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두 개 법입니까? 그 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이런 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우리 소비자, 국민들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 법으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한홍 위원 지금 이 법이 그 법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만약에 이 법을 제정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 법들과 상충되는, 겹치는 부분은 빼고 기존 법에 없던 부분만을 가지고서 하든지……

○윤한홍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법을 공청회도 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상세히 잘 모를

것 같아서 앞에 두 가지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 보호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법이 됐을 때 보호가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빠져 있던 부분이 더 보호가 되는지 이런 부분만 딱 발췌를 해 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면 그냥 단순히 두 개의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다 이건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개의 법을 통합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새로운 법에서 더 많이 보호가 되면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보호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이 법안에는 피해구제 절차나 단체소송, 그다음에 금융위의 조사권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항들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조항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 법에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 피해구제 절차라든지 금융위원회 조사권이라든지……

○**윤한홍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줘야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하나하나 조문별로 축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심의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5페이지에 입법 방식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방식으로 할지 이것을 일단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

○**오기형 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쉬었다가? 지금 한 시간 반 됐는데……

○**오기형 위원** 오늘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것만 하고 쉬는 게 어떨까요?

○**윤한홍 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좀 쉬었다가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저는 한 4시 반쯤 쉬려고 그랬는데.

○**윤한홍 위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요. 난 이게 그냥 막연해.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쉬는 동안에 일단 이

복잡한 이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건지, 이 접근 방법을 수석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의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예,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제가 이 법은 21대 시작되는 2020년 8월에 신종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주식 리딩방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단계 사기부터 또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많은 사기꾼들이 진짜 없는 서민들 한 1000명한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사기를 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사기를 치면 이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전 재산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모습들이 우리 동네에 너무 많았고 그중에서 한 이삼억 손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려면 ‘내가 네 돈은 줄게’, 그러면 자기 돈만 주면 그 사람들은 고발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기름을 만든다라는 사기꾼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주변의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기꾼들 밑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애들이, 부산 같은 데는 연산동이나 이런 데 가면 억수로 좋은 빌딩 뒷골목에서 담배를 막 피는 애들이, 이 친구들이 없어지면 또 그 애들이 사기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법안을 제가 댔는데, 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불법행위인데 사기행위인데 이 사

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면 금방 나오고 하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래서 이런 법을 제가 만든 이유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것을 계좌를 정지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될 입장도 되고, 이렇게 사기를 친 친구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사기꾼들을 없애는 이런 방지법을 냈는데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조사 권한이 없다, 여러 가지 하면서 서로가 핑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온 이런 법안이었는데,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 다중사기범의 내용도 좀 포함되는, 더 포괄적인 사기범죄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행안위에서 되는 그 법의 논의 경과를 본 뒤에 이 법을 논의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법이 꼭 돼야 된다, 통과돼야 된다 이런 뜻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만 마련된다면 저 법은 발의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 이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좀 더, 이 사기가 다 금융사기예요.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맡기기 전에 계좌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서 갈 데가 없어요. 금융위원회에 가면 경찰에 가라, 경찰에 가면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 유사수신 이런 거 생기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낸 법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소극적인 문제도 있었고, 지금 행안위에서 이 법을 한다면 일단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 법을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우리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행안위에서 사기를 모아 가지고 특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하더라도 그건 법사위에서 해야지 행안위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아마 논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응천 위원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뭐 그것 보는 건 보기로 하고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마 이게 뭐 경찰 관련해서 그랬나 보지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래도 처벌 법규는 다 법사위에서 해야 됩니다.

입법 방식에 대해서 아까 논의를 좀 하다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도, 특수강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을 앞에 두고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러니까 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막 문제되는 것들을 모읍니다.

그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지하철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이렇게, 이 법 입법 당시에 입법 불비가 있었던 것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던 것들을 꼭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은 새로 구성요건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를 기본법으로 하는 그런 특별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저는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이 취지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맨날 보면 다수의 피해자가 정말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피해 액수도 무지무지하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피해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아니면 시효 지나고, 그러니까 이건 사고 치는 게 남는 장사인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지금 비등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현행법이 있는데 그걸 좀 바꾸고 없는 것만 새로 넣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도강간 친족관계 강간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형법에 그 법들이 죽었느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고 신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법에 이게 있더라도 이것을 갖다 좀 더 구성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처벌을

더 세계 한다든가 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그 관계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기는 보는데 법체계상으로는 이것 원래 있으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정합성이 상당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이 이것은 이 안에서 완결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법과의 문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이거 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보완되고 하는 부분을 좀 축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 소위에서는 계속 심사하면서 간단하게 논의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법안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오늘 의결은 어렵겠고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 순서를 좀 변경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천천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게 진짜 오래됐는데……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것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할 수가 없어서 다음번 소위 때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제가 김종민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해도 반의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고 했거든요. 박재호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김병욱·홍성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2개의 법안인데요. 최근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불건전 영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과 정식투자자문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고, 홍성국 의원안은 온라인 주식리딩방 등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2쪽의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명칭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고 홍성국 의원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고 영업 수단을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형태를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김병욱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성국 의원안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수리 거부 사유에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추가하고 거짓·부정한 신고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안에 대한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의 의무교육 내용을 포괄하는 자격증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교육수준도 9시간의 준법교육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고 홍성국 의원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퇴출규제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김병욱 의원안 같은 경우에 신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직권말소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 직권말소 사유 중에 과태료를 연속 3회 이상 받은 자를 신고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합하여 2회 이상 받은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정보이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공시하고 약관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표자 외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의 보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성국 의원안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의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임원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만 반영하였습니다.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 소비자 법규의 규율을 받고 있어 약관 변경 등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불필요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약관 등으로 홍보되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김병욱 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홍성국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2페이지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8페이지도 동의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임원 변경 보고 의무 관련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정보이용료 공시, 약관 보고·공시 관련해서 수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후보고 의무만 부과된 약관이 금융위 보고

약관으로 과대 홍보되거나 악용되어서 투자자가 피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 1인 업자로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 준수 능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대안을 주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대안으로는 약관 민원 대부분이 해지 절차, 환급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래서 이걸 빼자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빼자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빼자는 의견입니다.

19쪽 보시면 금융회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소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지만 금소법에서 영세사업 적용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도 고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사실 요즘 리딩방에 의한 주식사거나 주가조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자체는 빠르게 통과돼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에 일어나는 주가조작이나 그런 행위 자체의 피해액이 굉장히 큰데 3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올리게 됐을 때 다른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억 정도로 상징적으로 두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응천 위원 1억 이하로 하면 되지.

○이용우 위원 1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1억 이하 과태료 제안하셨는데……

○조응천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저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유사투자자문업을 끌어들이면 준 유사자문업이 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유사가 저쪽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직 어떤 건지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태를 보고 저희가……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끌어들이면 그 바운더리 밖이 또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불법이라든지 또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리딩방하고 유튜브 증권방송이 있는데 매체가 더 다양화될 테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중에서 쌍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매체는 투자자문으로 해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 투자자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쪽 부분, 문제된 부분을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뭐 추가로 더 할 건 없습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지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코인 같은 것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용우 위원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 거기에 추가하면 되지요.

○윤주경 위원 그런데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일단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추가, 추가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마이크 하고 하세요, 윤 위원님.

○윤주경 위원 이것도 결국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추가, 추가하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우 위원 사실 기본법이 자본시장법입니

다.

○윤주경 위원 그런가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1억 원 이하로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병욱 의원안에 있는 보고 의무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견이 없는……

○조응천 위원 임원 변경에 대한 것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것은 수용입니다.

○조응천 위원 임원 변경만 살리고 다른 것은 다 삭제라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정리가 되었습니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박용진 의원과 제가 발의했던 금융실명제법이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용한다면 간단하게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지금 법안 상정이 어차피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의견 듣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국세청상속증여세과 이정순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의사일정 25항도 거의 그냥 통과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곤 의원님 안도 반대가 있는 건인가요?

○**김희곤 위원** 이것은 진짜 거의 통과돼야 됩니다. 아무 이의가 없을걸요. 이견이 있는가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빨리 좀 오라고 그러세요, 국세청 국장.

그게 너무 많아서, 보험사기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를 잘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박 국장님, 마이크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법안 심의는 안 하지만 다음에 또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그 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재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상속증여세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가 정부 결정이다 보니 대부분의 신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자료 보관이 5년밖에 안 돼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경우가 실제 조사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 보관이 좀 더 길게 부과제척기간까지만 댔으면 조사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래서 15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요. 무신고와 조세포탈이, 서류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15년이기 때문에 15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잘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속기록에 기록했다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때 보고 다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때는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오셨으니까 질문은 할 수 있나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하셔도 돼요.

○**김한규 위원** 지금 이게 자료 13페이지 이하 관련된 내용이지요?

국장님, 금융회사 말고 다른 기관들에 15년 동안 자료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들이 비슷하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금융회사에 상업 장부나 영업에 중요한 서류를 1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입법 과세 목적을 고려하면 다른 근거 서류들도 다 마찬가지로 15년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취지면? 다른 법률도 다 그렇게 돼 있나요? 15년으로 돼 있습니까?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지금 금융기록에 대해서 5년은 상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특별법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법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통용되는 법이라는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상법이나 문서 보관의무 기간은 알겠는데요, 5년이나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속세·증여세하고 관련해서, 특정해서 관련된 자료만 15년으로 장기간에 문서 보관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법안 이잖아요, 이 법안이요.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글썄요. 지금 금융실명법에 이게 15년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상속증여세법, 저희는 그 법을 활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지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이게 국세기본법에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부과제척기간이니까 그 15년에 맞춰서 보관해 달라 그 뜻 아닙니까?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 뜻이지요.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도 취지는 알겠는데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금융실명법 말고도 다른 문서 보관의무들이 다 15년으로 동일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법률 하기의 통일성 측면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래도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관련된 내용이 개별 법령에 따라서 문서 보관의무로 잘 돼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쭙봤던 건데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재호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조응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이윤수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장	이창운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윤차용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심현구		
국세청자산과세국장	박재형		